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54,673,405	49,640,202
일반회계	1,473,514,530	44,205,436
특별회계	181,158,875	5,434,766
공기업특별회계	166,278,166	4,988,34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6,183,917	1,685,518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0,094,249	3,302,827
기타특별회계	14,880,709	446,421
주택사업특별회계	1,170,536	35,11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283,105	98,493
농공단지특별회계	1,088	33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8,814	1,46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94,275	50,8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94,496	191,835
수질개선특별회계	897,900	26,93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58,000	4,740
도시개발특별회계	176,495	5,295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056,000	31,6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5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